

# QA

**Q**…일반 아파트의 주방 배기 덕트 부위도 자동방화댐퍼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103도 중력식 댐퍼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지와, 점검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
**A**…건물 내에 쾌적한 환경의 제공을 위한 냉난방 설비, 화장실, 주방의 배기 등 덕트 설비가 설치되는 데, 이러한 공기의 이동 덕트는 화재 시 연기와 화염을 전파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자동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합니다. 일반 아파트의 방화구획선상을 관통하는 덕트에는 「건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방화구획의 설치기준) 제3항에 적합한 방화댐퍼를 설치하고 KS F 2815(배연설비의 검사표준)5.1.4(방화댐퍼)에 “검사구·점검구는 적정한 위치일 것”에 만족하면 됩니다.

**Q**…비상용 승강장(홀)은 감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야 한다고 건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, 건물(거실) 구조상 방화셔터로 구획하고자 합니다. 참고로 비상용 승강장으로서 소방법상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, 이 경우 법적·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.

**A**…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구조는 방화구획대상으로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방화구획의 설치기준) 제2항 및 「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에 적합하여야 합니다.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-232호 제3조제2항에 “일체형 셔터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.”라고 언급되어 있으니, 해당 건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Q**…소방설비할인율표에 따른 할인이 되려면 꼭 FILK 인증제품만 사용해야 하는지, 만약 할인이 된다고 가정하면 누적으로 최대 몇 %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

**A**…「소화설비규정」에 “초기소화기는 FILK 인증품인 경우에 한하여 소화기할인을 적용한다.” 또한 「화재보험료율서」에 “소화설비규정에서 정하는 해당 소화설비의 주요구성품은 방재시험연구원의 인증품(FILK인증품)이어야 한다. 다만, 소화기를 제외하고 주요 구성품이 국가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경우는 할인율의 70%를 적용할 수 있다.”라고 되어 있습니다.

한편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소화설비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며, 소화설비할인율은 최대 6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**Q**…아파트 단지 내 주민 편의시설로 각종 운동시설 등이 있고, 이 시설들이 아파트 상가가 아닌 관리동에 위치하여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 경우 주택화재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

**A**…주택화재보험 적용물건에서 아파트의 경우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용 운동시설은 주택화재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**Q**…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조(보험금액)에 따른 보험금액에 위자료가 지금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.

**A**…위자료란 '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(직계존속)·직계비속(직계비속) 및 배우자,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, 과실(과실)의 정도, 생계 상태,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액'을 말하는 것입니다.  
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서 신체관련 보험금액은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조(보험금액) 및 시행규칙 제2조(실손해액)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하며, 이 규정에 위자료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보험금액 산정 시 위자료는 감안하지 않습니다.

**Q**…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보면 제20조 외기취입구 항목에서 “취입구가 배기구의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아파트 옥상에 제연팬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층이 3개 층 이상(9m) 차이가 나서 수직거리는 1m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킵니다. 이렇듯 수직거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수평거리를 꼭 충족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.

**A**…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1A) 제20조 2호 나에 의거 “취입구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이격”하도록 한 것은 화재 시 건물외벽을 따라 상승하는 오염된 공기가 취입구를 통해 전실로 급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 따라서 반드시 수평거리 5m 이상 이격이 필요합니다.